

문의사항 043-850-4040,4041,4042 (문자 가능)
 메일 su00514@korea.kr 팩스 0508-8230-0697
 문자메세지 받는사람에 메일 주소 넣고, 사진 보내기 가능

★사전설명회(상담1차) 꼭 참석 하기(문자 및 전화 안내)

- 신청서 제출후 심사까지 1개월 걸립니다.
- 심사결과는 문자 및 전화, 우편통지(등기) 됩니다.

★사전설명회(상담1차) 꼭 참석 하기(문자 및 전화안내)

- 상담사와 대면상담 3번 →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 월 최소 2회이상 구직활동 이행하기

보완요청 :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2번하였음에도 미제출시 반려
 초기상담전 취소: 총주고용센터 → 서식자료실 → 취하신청서 작성(자필서명필수) 후 제출(상담1차 후 중단 또는 취소시 3년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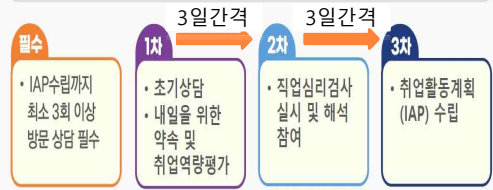
<해당자 제출서류>

- 사업자있는 사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거용건물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 특수형태근로자: 위촉계약서, 고용계약서, 위탁계약서 中 1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中 1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귀화전: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中 1
- 주30시간미만 근로자: 근로계약서(근무일, 근무시간, 급여 확인되어야함)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고용센터 복지팀에서 발급가능)

심사 완료 후 수급대상자 상담진행 절차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자신의 직업적 문제를 이해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참여 시기를 결정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



❖ 취업활동계획(IAP)을 변경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급주기가 시작되기 전 '지정일'에 상담자와 협의하여 변경
 → 다음 지급주기가 3월 4일~4월 3일인 경우에는 최소 3월 3일 이전에 변경하여야 함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 고용센터의 구직자 취업역량 프로그램 참여
- 고용센터의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 채용 관련 행사에서 면접 참여
- 우편·인터넷 구인 응모, 방문 채용 면접 응시
- 기타 취업희망 분야와 관련된 구직활동 이행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 단위기간 중 **구직활동 2회 이상 이행**하여야 합니다.
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수료시 구직활동 1회 (집단상담은 2회)인정

직업훈련시에는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시 구직활동 2회 인정
훈련일수 10일미만 시 구직활동 1회 추가로 하여야 함.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1유형 대상자 4회차 이내에 취업시, 2유형은 조건부 수급자만 해당)

- ◎ 취업활동계획 수립된 날부터 3회차 구직촉진수당 지정일까지 취·창업한 경우 지급
 - [근로자] 주30시간 이상 취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되어야 함
 - [프리랜서·창업]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중 취업 또는 창업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액: 50만원(1회) ※취업 1개월 후 신청
- 다만, 1개월 미만 근무후 퇴사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 지원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

Q1. 참여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 등본 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4억 미만)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1쪽의 1유형/2유형 설명표와 가구원 수 대로 기준중위소득을 참고, 심사 포함 대상(원칙) 등본상 신청인의 본인 및 배우자, 1촌이내 직계혈족만 포함됩니다. 그외는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세요.
23년1월부터는 가족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원칙상 예외지만 포함 할 수 있는 대상은 (만18세 이하, 만70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신청서의 가족수당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증빙서류 필요)

Q2. 국민취업지원제도 2가지 유형을 알려주세요.

- ▶ 1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청년, 비경활(비경제활동자))이 있습니다.
1유형으로 선정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이 지급**되며, 직업훈련시 자비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 ▶ 2유형에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이 있으며,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지원 서비스는 똑같이 받을 수 있으며, 참여수당, 훈련 참여시 훈련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최대 192만원, 페이지 2쪽 참고)
- ▶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활,청년), 2유형 특정계층 및 중장년, 청년 중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대상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Q3.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빠르면 2주에서 최대 1개월 소요됩니다. (처리기한 1개월이며 7일 연장 가능) 심사완료후 3번 상담받아야 합니다. 상담2회차 부터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기때문에 수업일정이 빠른경우에는 다음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국취 참여후 45일부터 직업훈련가능)

Q4. 선발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전화(또는 문자)로 선발됨을 통보해드리고 방문상담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등기로 통지서 우편 발송[고용센터 방문상담은 미발송])
단, 1유형 선발(청년)형과 2유형(중장년층/청년)으로 선발되신 분들은 민간위탁기관 중 한 곳 (행복잡고/제이비커리어/한국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Q5.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심사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사전설명회 참석여부를 안내해드리며, 민간위탁상담 대상자는 위탁기관에서 따로 연락이 갑니다. 사전설명회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설명 및 본인이 어느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지 등 사전 질문지등을 통해 **초기상담1회를 진행**하며, 끝난후 담당 상담사를 만나면 방문일정 등을 안내 받을 예정이며, 본인 또한 어느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지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안대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직업훈련이나, 일경험프로그램, 각종 특강, 창업지원,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담당 상담사와 상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담당 상담사가 내주시는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6. 내일배움카드를 그냥 발급 받는 것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발급 받을시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할 시에는 자비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사와의 대면상담 3회 및 구직활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내일배움카드만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할때에는 수업마다 자비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담사와의 상담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보다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혜택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많습니다.

Q7. 신용문제로 통장이 압류되어있어요!

● 심사결과를 1유형 요건심사형/ 1유형 비경활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신 우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취업이름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비경활인 대상자분들은 사전설명회 참석하시면 통지서를 드리고 있으니 참석 후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Q8. 국민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어요!

● 참여기간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상담사에게 꼭 말해주세요. 57만원(23년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3번이상 수익발생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가 중지되며, 참여가 제한됩니다. 그전에 일했던 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구직수당을 지급받는 주기에 통장에 찍히는 수익을 기준으로 부지급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꼭 상의하세요. 말하지 않고 받으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및 5년동안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은 정보연계로 언제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Q9. 이사를 해서 고용센터를 옮기고 싶어요!

●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수급자격지원이관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 (꼭 자필서명)하여 담당자에게 옮긴 주소가 기재되어있는 등본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사 및 접수담당자에게 물어보주세요!